

안 내 말 씀

안녕하세요.

2024년 2월 23일에 개최된 2023학년도 제7회 휘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「등 5건」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며,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

회 의 결 과

1. 일시 :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15:40

2. 장소 : 휘문고등학교 본관 2층 회의실

3. 참석인원(참석/정수) : 12명 / 15명

- 학부모위원 : 5명 / 6명 - 지역위원 : 4명 / 4명 - 교원위원 : 3명 / 5명

4. 안건 처리 결과

No.	안건명	처리결과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2024학년도 휘문고등학교 학교급식 관련 심의(안)	원안가결	<p>▷ 주요내용</p> <p>가.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과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나. 학교급식 운영방식, 급식대상, 급식회수,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다. 2023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보고 및 2024년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 - 2024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(별도 첨부) 라. 식재료 원산지, 품질기준 및 사전반입 식재료 및 수입품,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마. 식재료 구매 시 복수지정과 단순지정에 관한 사항 바.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사.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아. 교직원급식비 결정,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징수, 무상급식비 및 수익자부담 (교직원급식비)급식비의 징수 자. 우유급식 운영여부 차. 기타 안건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(안)	원안가결	<p>▷ 주요내용</p> <p>가) 수입 계획서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사업명</th><th>수입계획</th><th>수입기간</th><th>기부(모금대상)자</th><th>기부(모금)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이월금</td><td>262,147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이월금</td><td>262,147</td></tr><tr><td>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/td><td>5,300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<td>5,300</td></tr><tr><td>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/td><td>27,500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<td>27,500</td></tr><tr><td>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/td><td>13,000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기타(개인, 단체 등)</td><td>13,000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합계</td><td>307,947</td></tr></tbody></table> <p>나) 지출 계획서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사업명</th><th>지출계획</th><th>지출시기</th><th>세부사용내역</th><th>지출금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/td><td>23,174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</td><td>23,174</td></tr><tr><td>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/td><td>208,364</td><td>24.03.01.~25.02.28.</td><td>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</td><td>208,364</td></tr></tbody></table>	사업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	이월금	262,147	24.03.01.~25.02.28.	이월금	262,147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5,3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5,300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7,5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27,500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13,0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13,000	합계				307,947	사업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	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23,174	24.03.01.~25.02.28.	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	23,174	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08,364	24.03.01.~25.02.28.	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	208,364
사업명	수입계획	수입기간	기부(모금대상)자	기부(모금)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월금	262,147	24.03.01.~25.02.28.	이월금	262,1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5,3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5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7,5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27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13,000	24.03.01.~25.02.28.	기타(개인, 단체 등)	1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			307,9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명	지출계획	지출시기	세부사용내역	지출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	23,174	24.03.01.~25.02.28.	학교 시설 보수 및 구입	23,1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208,364	24.03.01.~25.02.28.	장학금 지급, 학생들 동아리 및 축제활동 지원 등	208,3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/td> <td>76,409</td> <td>24.03.01. ~25.02.28.</td> <td>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</td> <td>76,409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계</td> <td>307,947</td> </tr> </table>	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76,409	24.03.01. ~25.02.28.	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	76,409	합계				307,947			
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	76,409	24.03.01. ~25.02.28.	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 지원 등	76,409												
합계				307,947												
3	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전출 건	원안가결	▷ 주요내용 1. 전출 금액: 금5,000,000원(금오백만원) 2. 전출 사유: 학교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농구부 동계 전지훈련 경비 지원													
4	휘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	원안가결	▷ 주요내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개정안(신)</th> <th>현행(구) (개정 2021년 1월 29일)</th> <th>법령검토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td> <td>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td> <td>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(회의소집 등)</td> <td>개정 조례 반영</td> </tr> <tr> <td>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개정안(신)	현행(구) (개정 2021년 1월 29일)	법령검토	비고	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(회의소집 등)	개정 조례 반영	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	
개정안(신)	현행(구) (개정 2021년 1월 29일)	법령검토	비고													
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9조(회의 소집 등) ④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(회의소집 등)	개정 조례 반영													
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

2024. 2. 23.

휘 문 고 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